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도네시아 남부지역 거주 우리 국민 및 여행객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발리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재외공관의 분관·출장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외공관의 분관·출장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의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본분관란 다음에
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발리분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발리분관	인도네시아공화국 발리		발리·롬복, 말루쿠, 누사뎡가라, 플로레스, 수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